2026년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개정 공지(1)

윤준필 관세사

- 관세사 시험은 시험일 당일 시행 중인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이 적용됨.
- 현재 발표된 개정법령은 2026년 1월 2일 또는 2026년 1월 6일 시행을 기준으로 하는 FTA특례법, 시행령, 시행규칙이며, **아랍에미리트연합국(UAE) CEPA 및 에콰도르 SECA 관련 개정사항은 협정 발효일 기준으로 시행이라 현재는 시험범위는 아니므로 반영하지 않음 추후 확정발표 이후 업데이트 예정**

1. 공통사항 -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

(1) 기획재정부 → 재정경제부

(2) 기획재정부(장관) → 재정경제부(장관)

(3) 기획재정부령 → 재정경제부령

(4) 산업통상자원부(장관) → 산업통상부(장관)

2. 교재 p30 → (2)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(시행령 제6조 제2항)

• 공통규정을 적용하던 필리핀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유효기간 규정 추가

개정 전	개정 후
⑩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	①-⑩ (기존과 동일) ⑪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. 다만,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.

3. 교재 p77 → (7) 조치적용의 예외(시행령 제30조 제7항)

• 특정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제외에 캐나다 협정 추가

개정 전	개정 후
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-가-1 ②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-나-1 ③ 영국과의 협정 부록 2-가-1	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-가-1 ②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-나-1 ③ 영국과의 협정 부록 2-가-1 ④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-사

4. 교재 p101 → ■ 소액물품 (1) 대상 (시행규칙 제30조 제6항)

• 수입신고 생략되는 특송물품의 소액물품 면세적용 범위 확대(미.콜.뉴 → 전체 협정)

개정 전	개정 후
상기 1.③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、페루、미합중국、호주、캐나다、콜롬비아、뉴질랜드、캄보디아、베트남、중국、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의 물품으로 한다. 다만,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①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, **③의 물품은 미합중국,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,**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①의 물품으로 한정한다.	상기 1.③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、페루、미합중국、호주、캐나다、콜롬비아、뉴질랜드、캄보디아、베트남、중국、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의 물품으로 한다. 다만,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①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, ~~③의 물품은 미합중국,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,~~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①의 물품으로 한정한다.

(이상)